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4호, 제29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의 개정 사항이 2018년 4월 19일부로 불임과 같이 공포·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동 내용을 업계에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고시문 1부.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령 1부.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고시문 1부. 끝.

국가기술표준원장

수신자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FITI시험연구원장, 한국외투시험연구원장, KOTITI시험연구원장

주무관 김다연 과장 전결 2018. 4. 19.
김용태

협조자

시행 생활제품안전과-1131 (2018. 4. 19.) 접수

우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http://www.kats.go.kr>

전화번호 043-870-5458 팩스번호 043-870-5677 / dyk25@korea.kr / 대국민 공개